

3. 지적사항

NO. 3	직원 채용절차 미준수	
위법 부당 내용	직원 채용계획 사전협의 부적정	직원의 채용계획 수립 시 공고 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안산시장에게 문서로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안산시장이 제시한 의견이 있을 시 그 의견을 반영하여 채용공고를 시행하여야 하나, 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문서로 채용계획의 사전협의 없이 운영인력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직원을 채용함.
	채용 공고절차 부적정	직원 신규채용 공고 시 공고문을 안산시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 등에 공고하지 않았고 접수 기간을 5일 미만으로 공고하였으며, 공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공고함.
	직원 채용 서류전형 운영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평가 시 시험위원 중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야 함에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여 심사하였고, 서류심사 시 입사지원서 경력 및 관련 자격증 기재 사항의 증빙서류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의 제출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의 기재 사항대로 적격 판정하여 응시자 중 최고점의 평가점수를 부여함.
	예비합격자제도 운영 부적정	면접시험 1순위인 최종합격자가 계약예정일에 임용을 포기 하였음에도 예비 1순위 응시자에 대하여 추가 임용을 하지 않고 새로운 공고를 통해 신규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예비합격자의 채용기회가 상실됨.
	직원 최종합격자 선정 절차 부적정	직원의 면접시험 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면접시험을 시행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을 공개 채용하면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을 면접시험 최고득점자순으로 2명을 선정하여 이사장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방침 결재를 받아 평가함으로써, 면접순위 2순위인 자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됨.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위와 같은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 직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라 “징계” 요구 	
NO.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절차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없이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기존 인사위원회(전환심의위원회 구성요건(·외부위원에 노동계 참여 등) 미충족)를 통해 내부 평가 기준 방침을 받아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	
처분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라 “징계” 요구 	

NO. 12	제규정 관리 소홀
위법 부당 내용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지침과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등(경력경쟁시험의 채용기준 및 자격조건, 징계의 시효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처분 요구 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 상위법령의 임·직원 채용에 관한 규정을 내부 지침에 반영하도록 “개선” 요구